

문화산업연구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예원예술대학교 부설 문화산업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역문화 컨설팅, 문화영상관련 기업의 마케팅 역량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문화산업 정책 개발 및 지역문화 컨설팅
2. 문화영상 관련 기업 창업 교육
3. 문화영상 관련 기업 컨설팅
4.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
5. 시민문화활동 지원 및 자문
6. 기타 본 연구소와 관련된 산학협력 연구사업

제4조(위치) 본 연구소는 예원예술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

제5조(조직구성) ① 본 연구소의 기본 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

1. 연구소장 : 1명
2. 간사 : 1명
3. 운영위원 : 5명 이상 9명 이내
4. 연구원 : 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 00명

② 연구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운영위원 및 간사는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④ 연구원의 경우 전임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, 위촉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⑤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분과위를 개설하여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구성원의 역할)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.

③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 업무를 관할하고 연구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연구원 및 분과위원은 본 연구소가 수행하는 전문 연구에 참여한다.

제7조(구성원의 임기) ① 연구소장 및 간사,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보충에 의한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 연구원과 분과위원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정한 임기에 한하며 연임이 가능하다.

③ 구성원은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본 연구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제반문제를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9조(운영위원회 소집) ①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연구소장이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 의결) ① 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된다.

②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제4장 재정

제11조(연구비 예치) ① 본 연구소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연구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연구비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전항의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 수령액의 일정 비율을 연구소 운영비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소장은 연구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연구소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매 학기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재정) 이 연구소 재정은 다음과 같이 총당한다.

1. 교외 연구비
2. 기부금
3. 본교의 연구지원비 및 운영지원비
4. 기타 수입금

제13조(예산·결산) ① 본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기획조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본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한다.

제14조(해산) 본 연구소가 해산될 때 그 재산은 예원예술대학교에 귀속한다.

부 칙 (2007. 8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2. 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원예술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다.